#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8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한정애·황 희·조 국

민홍철 • 이학영 • 박지원

김교흥 • 민병덕 • 송옥주

부승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7호).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7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 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 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	
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	
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7. <u>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u>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
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u>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u>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
된 경우	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7의2. ~ 13. (생 략)	7의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